

동등한 타인으로 함께 살기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의 삶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당신은 장애를 아십니까?

01 한국 장애인은
몇 명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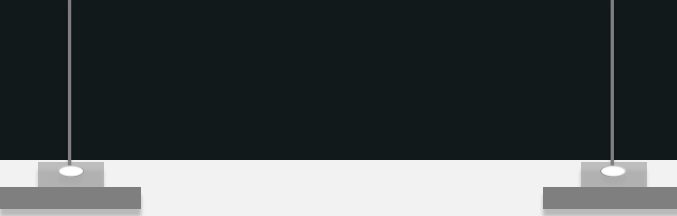
장애인은
누구일까요? 02

03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04

01

만들어지는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사회적 규정

01 장애의 정의와 개념

02 장애 유형별 특성

03 장애인의 현황



1983년8월9일, 주일날.
엄마가 교회 예배 드리라고
준 헌금을 가지고,
교회는 가지 않고,
교통비로 유용하였다.
그날
경주 토함산에서 열리는
대학생행글라이딩대회에
나가서 날다가 추락해
척수장애인이 되었다.

엄마 말 듣지 않아서 그래!

01

동정

02

봉사

03

극복

장애,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왜”
통정, 봉사, 극복이라는
시각이 만연해 있을까?

비장애중심주의, 능력주의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 속도

그 때 그 시절
누군지 아시겠나요?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1년만의

1988.11.1. 장애인등록제도 실시

- 2001년 제1차 장애 범주 확대
- 2003년 제2차 장애 범주 확대

2019. 7. 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실시

17만6천명

1989.12.31.

장애인 등록 인구의 변화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근거
2007년 법개정 이후 매 3년마다 실시

262만2천명

262만2,950명

2020.5.31.

WHO(세계보건기구)의 설명

건강이상

손 상

기능제약

사회적 불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 ① ..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 유형
(15 유형)과
특징

분류		유형	특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자폐기능장애, 변형등의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손상으로인한복합적인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추상, 함몰, 비후등 변형으로인한장애
	내부 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신장을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심장의기능부전으로인한호흡곤란등의장애
		장루·요루 장애	배변기능이나배뇨기능의장애로인하여장루또는요루를시술한경우
		간장애	간의만성적기능부전과그에따른합병증등으로인한간기능장애
		호흡기장애	폐나기관지등호흡기관의만성적기능부전으로인한호흡기능의장애
		뇌전증장애	뇌전증에의한뇌신경세포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받아다른사 람의도움이필요한사람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정신발육이항구적으로지체되어지적능력의발달이불충분하거나불완전하고자신의일을처리 하는것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것이상당히곤란한경우
			지능지수와사회성숙성지수가70이하인경우
		자폐성장애	소아기자폐증, 비전형적자폐증에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및능력의장애
		정신장애	지속적인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및반복성우울장애에따른감정조절·행 동·사고기능및능력의장애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외출의 빈도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거의매일	67.3	70.1	45.4
주 1-3회	20.3	19.5	32.9
월 1-3회	7.2	5.9	12.9
전혀외출않음	5.2	4.5	8.8
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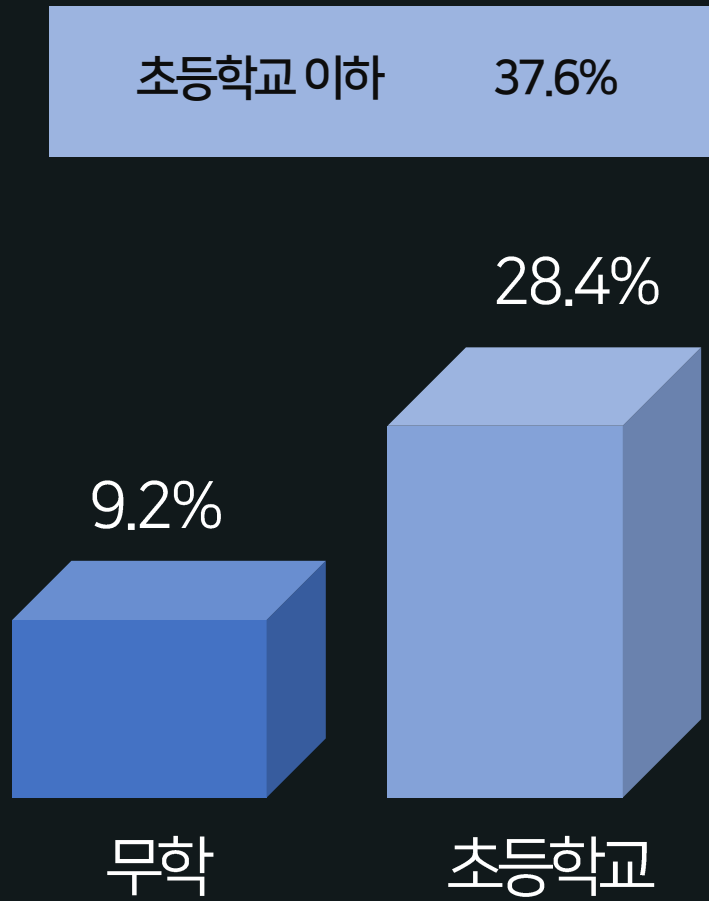
장애인 차별인식

구분	전체
없다	36.5
있다	63.5
계	100.0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구분	전체
알고있다	10.5
들어본적이있으나내용은모른다	25.9
알지못한다	63.6
계	100.0

교육정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구분	전체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무학	12.3	12.0	10.9	9.2
초등학교	33.0	29.4	27.5	28.4
중학교	18.4	16.0	16.8	18.1
고등학교	24.5	27.2	29.6	29.9
대학이상	11.8	15.3	15.2	14.4
계	100.0	100.0	100.0	100.0

<돌발퀴즈1>



- 왼쪽과 같이 두 개의 발가락만을 지닌 사람은 장애인일까요, 장애인이 아닐까요?
- 서아프리카 부족 사람의 발 사진
→ 그 부족 마을 사람들은 대다수가 발가락이 두 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장애로 인식 안됨.

<돌발퀴즈2>



비만은 장애일까 아닐까?

→ 비만은 미국에서는 장애

<돌발퀴즈3>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국 이민자는 장애인일까 아닐까?



→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민자는 스웨덴에서는 장애인

대상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



▪ 목이 긴 미얀마 타이 등지에 거주하는 '까렌족' 소수민족 마을의 여성들...

“당신이 보기엔 어떤가요?”

disabled people
people disabled by society = disabling society

할 수 없게 된 disabled

할 수 없게 만드는 disabling

문제의 원인이 장애인의 몸(손상)이 아닌 사회에 있다.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장애인은 개별화된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장애인.



흑인은 피부가 검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

흑인 = 노예

≠

[사회적 차별/억압]

손상은
특정한 관계 안에서만
장애가 된다

손상
(impairment) = 장애
(disability)

≠

[사회적 차별/억압]

장애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농인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한국인 vs 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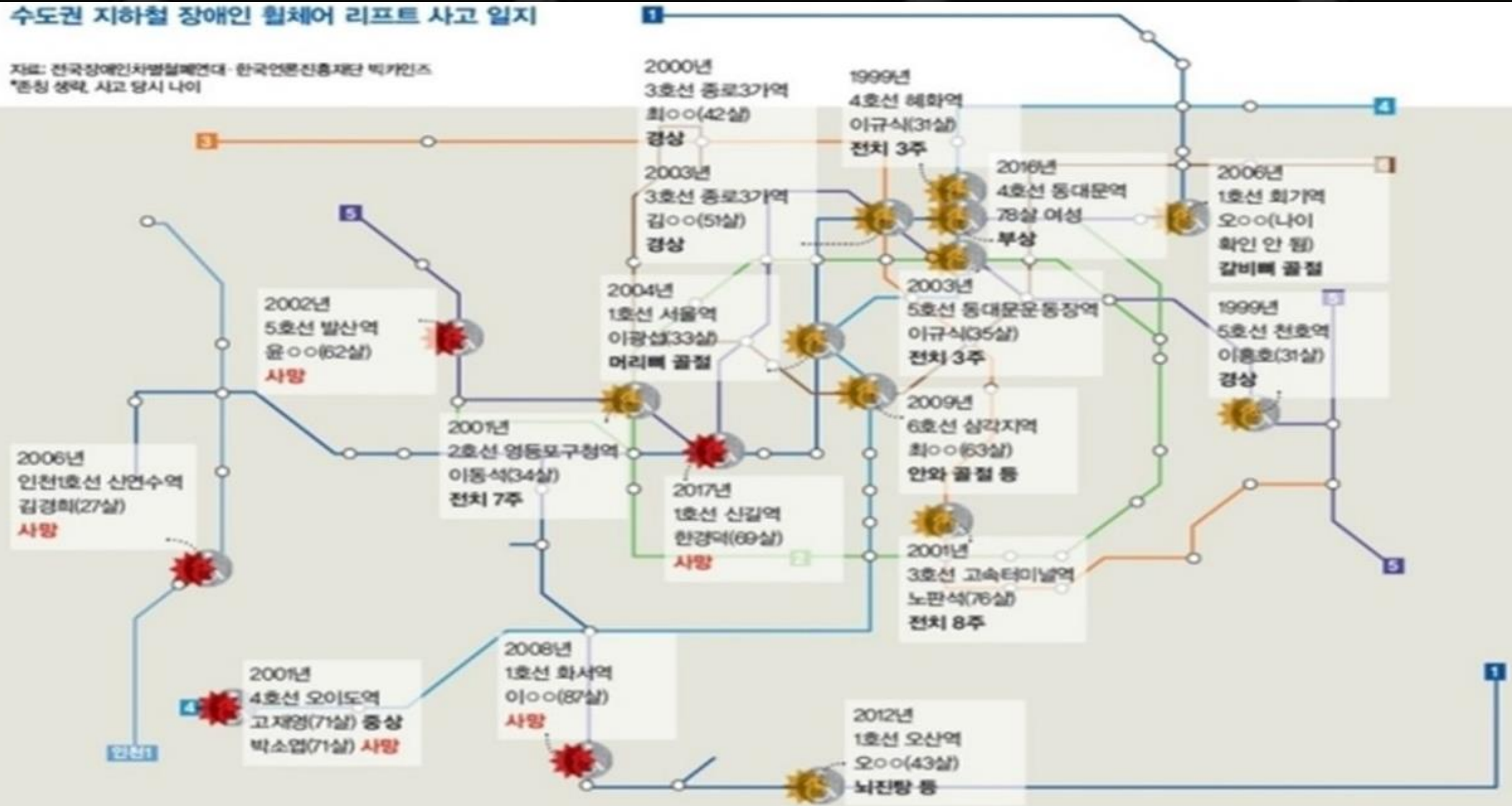


농인 vs 청인

02 장애인 이동권

수도권 지하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사고 일지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혼침 생략, 사고 당시 나이



(묵묵, 고병권, p.26.)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동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야학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낳았고 이 열망은 다시 이동권에 대한 요구를 낳았다. 그러던 중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야학 학생 한 명의 추락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 다른 역에서는 장애인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일은 배움에 대한 열망과 이동권 제약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던 야학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이때부터 노들야학은 본격적인 길거리 투쟁에 나섰다. 학생과 교사 들은 버스를 가로막았고 철로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

**사회 전체를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학교조차 갈 수 없다는 것,
사회 전체를 새로 배우게 하지 않고서는 야학에서의 작은 배움도 불가능하다는 것.**

1999년 6월28일, 이규식(31세, 뇌병변장애1급)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경사형리프트 추락하고, 중상
- 서울시지하철공사(현 서울교통공사) 상대 소송, 5백만원 배상금
- 경사형리프트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1999년 10월4일, 이흥호(30세, 뇌병변장애1급)

- 지하철 5호선 천호역, 경사형리프트 레일용접부준 끊어져 추락 직전까지 가는 사고
-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 항의방문, 성명서 발표, 엘리베이터설치 촉구

오이도역 수직형리프트 추락참사

- 2001년1월22일,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 수직형 리프트, 6개월 만에 추락, 장애인노부부 1명 사망, 1명 중상
- 오이도역장애인수직형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 (약칭 오이도역대책위)

노들장애인야학, 서울DPI,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실업자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약칭 편의연대)

2001년2월6일,
서울역 선로점거
(오이도역대책위)



20010206 · 서울역 선로점거 투쟁

2001년, 모든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2001년2월26일~4월19일, 중앙정부청사 앞 휠체어1인시위

2001년3월9일,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시다' : 연착투쟁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30분 늦게 되는 것을 이유로 우리의 선로 점거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감수하겠다.
그러나 30분이 아닌 30년을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장애인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함께 책임져야 한다”

“장애인의 70.5% 한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한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오이도장애인수직형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약칭 오이도대책위)

- 추락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서울시의 공식사과
- 재발방지와 대책마련 _ 지하철역사 살인기계 리프트 철거 및 전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 실질적인 성과를 단기간 내오기에 어려움,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의 필요성

2001년4월20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약칭 장애인이동권연대) 출범

- 상설연대체 구성 (7개단체 구성)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실업자연대, 편의연대, 서울DPI, 민중복지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서울시지제장애인협회; 오이도역대책위 철로점거 투쟁 부담으로 탈퇴
-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저상버스 도입하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도입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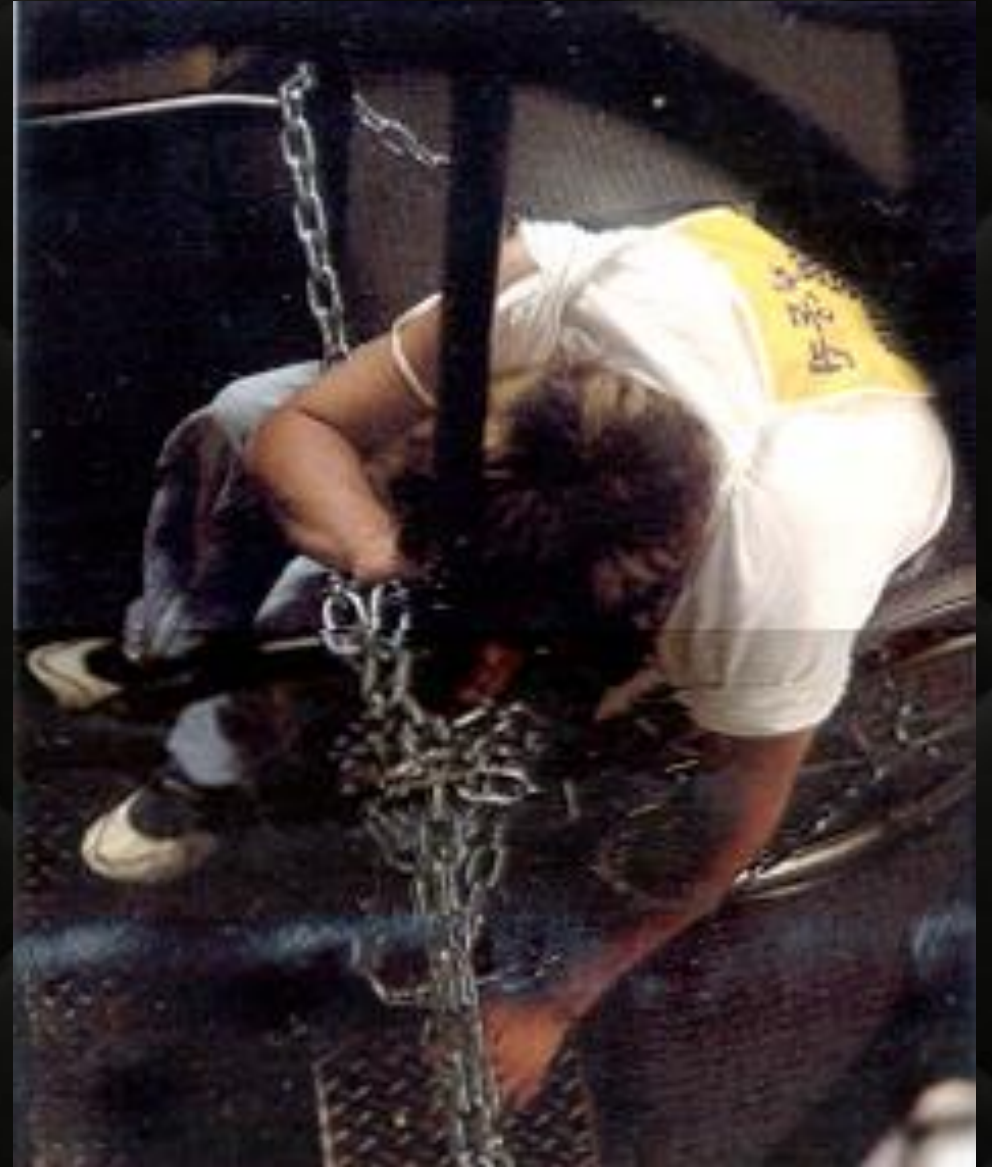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 2001년 6월16일, 마로니에공원(서울) 서명운동 시작, 2004년 말까지 진행
-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 2004년 12월 22일, 국회 전달, 55만 4천여명 시민들의 서명 받음.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 2001년 7월 23일, 제1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시작
- 2005년 1월 말, (오이도역 4주기) 41차례 매월 버스타기 투쟁 진행

2001년,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





2001년 8월 2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4시간 버스점거



2001년 8월 2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4시간 버스점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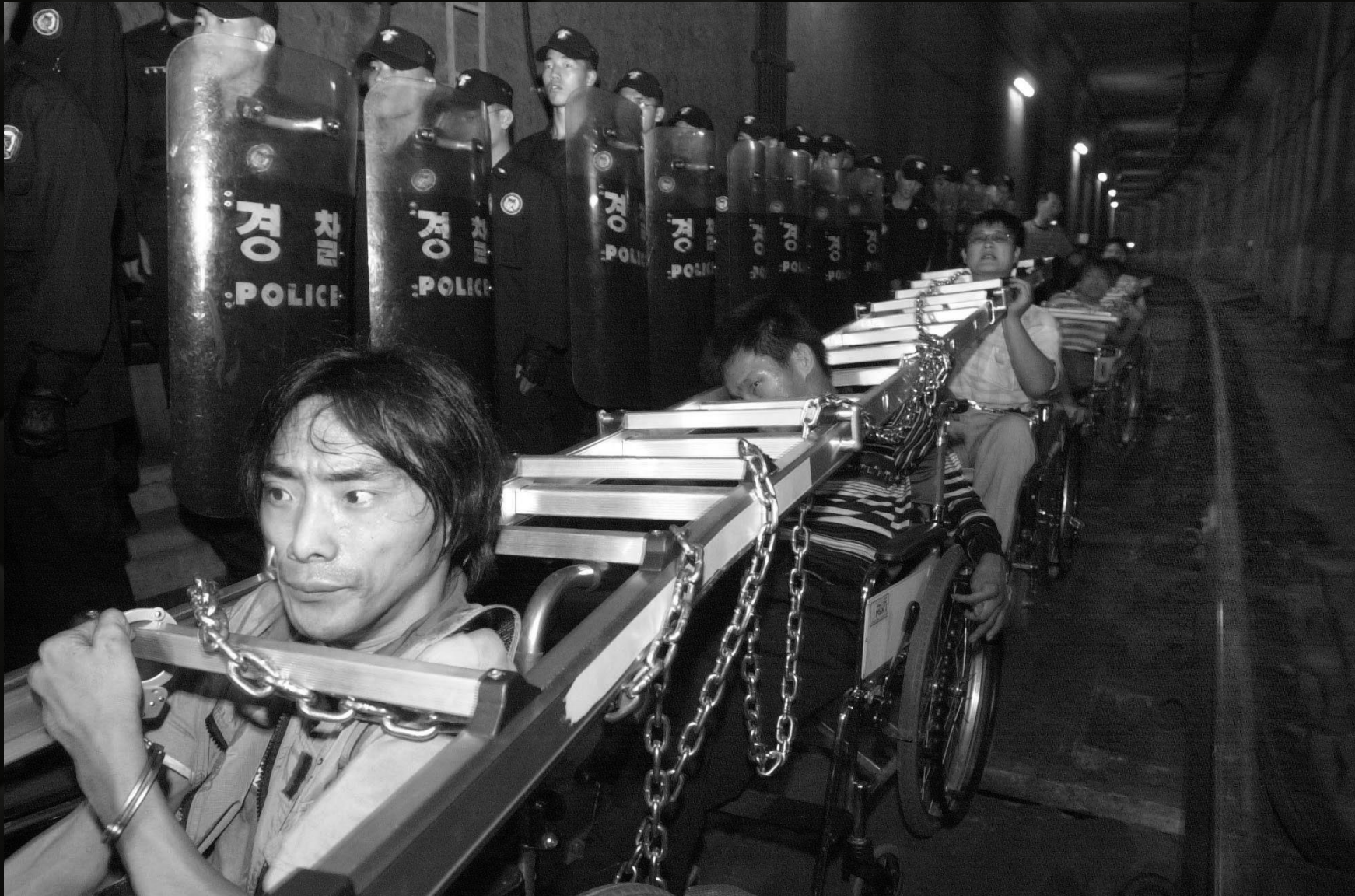
2001년 10월 31 종로 1가 도로점거기습사위

2002년 5월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2002년 8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무기한 단식농성(39일)

- 2002년9월11일, 서울시청역 선로점거 투쟁
- 2002년9월19일, 39일 단식농성 종료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저상버스 도입 추진 _협의회 구성 약속
장애인콜택시 100대 도입 약속



2002년9월11일,
서울시청역 선로점거 투쟁

리포트 장애인 추락참사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한 단식농성제 18일째



2002년9월29일, 국가인권위원회 단식39일차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2002. 12. 18.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각하]

【판시사항】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 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동권 :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단어 (200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5.1.27. 제정
2006.1.28. 시행

제3조 (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17년 10월 20일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신길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추모제
및
서울시
책임 인정·공식사과
1박2일 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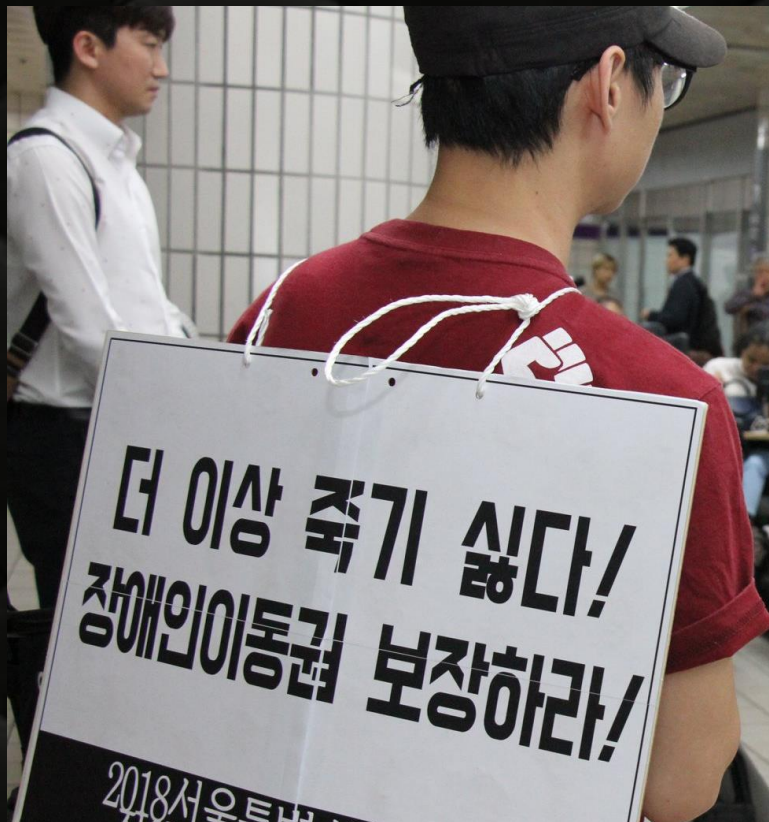
장소 : 신길역

일시: 2018년 5월 31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PetMin

코런데 장애인은 계단을 내려올 수 없어서



신길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서울시
책임 인정·공식사과
촉구 집회

이동: 신길역 → 서울시청역
일시: 2018년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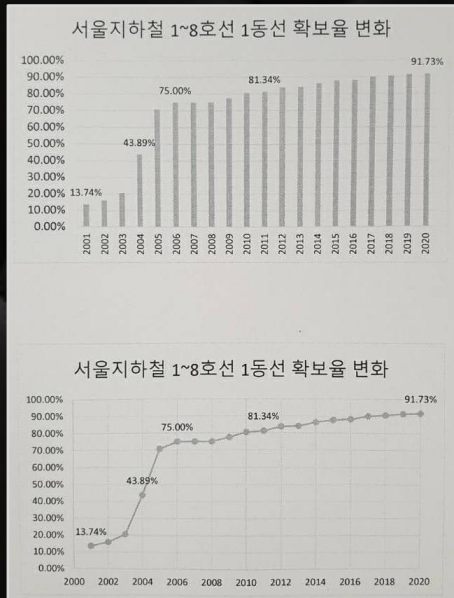


신길역, 장애인리프트 사라지고 드디어 엘리베이터 설치

2017년 고 한경덕 씨 추락사 이후 장애계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요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기리는 추모 동판도 설치해 (2020.2.29.)



지하철 1~8호선 1동선 확보 변화



서울지하철 1~8호선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율 변화					
- 20년간(2001~2020) 219역사 1동선 추가확보					
- 1동선 확보율 78% 증가 (2001년 : 13.74%, ⇒ 2020년 : 91.73%)					
연도	전체역사 (A)	1동선 추가	1동선 확보역사 (B)	확보율 = (B/A)*100	비고
2001	262	0	36	13.74%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1단계 : 2001년~2006년)
2002	262	6	42	16.03%	
2003	262	12	54	20.61%	
2004	262	61	115	43.89%	
2005	264	72	187	70.83%	
2006	264	11	198	75.00%	
2007	264	0	198	75.00%	
2008	265	1	199	75.09%	서울교통공사 (2단계 : 2008년~2021년)
2009	268	9	208	77.61%	
2010	268	8	216	80.60%	
2011	268	2	218	81.34%	
2012	277	14	232	83.75%	
2013	277	1	233	84.12%	
2014	277	6	239	86.28%	
2015	277	4	243	87.73%	
2016	277	1	244	88.09%	
2017	277	5	249	89.89%	
2018	277	2	251	90.61%	
2019	278	3	254	91.37%	
2020	278	1	255	91.73%	남한산성

13.74%

262개역사

36개

2001년

91.73%

278개역사

255개

2020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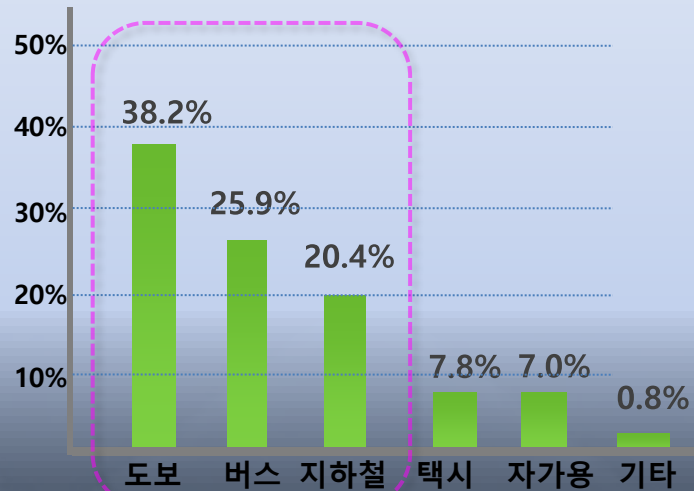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

2015. 12. 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민관합동 T/F)

■ 장애인의 이동 패턴

- 장애인의 약 84.5%는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



✓ 장애인 주 이용 교통수단

구분	총계	도보	자가용	버스	지하철	택시	기타
평균	100%	38.2	7.0	25.9	20.4	7.8	0.8
지체	100%	39.7	5.9	25.9	19.0	8.0	1.5
시각	100%	35.8	8.9	25.2	21.2	8.2	0.7
청각	100%	36.0	7.2	31.2	19.2	6.4	0.0
복합	100%	41.2	6.1	21.4	22.1	8.4	0.8

※출처: 2014년 7대 특별·광역시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국토교통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의 인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교통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3.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헌법」,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아태지역 장애인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선언」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준과 지침 및 권고사항을 존중한다.
4. 서울특별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을 실천한다.

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나. 지하철 승강장과 역차 간 간격을 줄이는 안전발판, 역사내 짐작블록, 안내표지 및 영상전송기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다. 시외버스에 대해 저상(低床, low floor)버스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무장애(無障礙, barrier free) 정류소 구축, 버스도착안내 음성신호기 부착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가능한 저상버스 모델은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의 종차 및 배차간격을 개선, 운전원 종인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자와 이용자 및 종차자 간 소통체계를 마련한다.

바. 시장·장터 유영별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바우처(voucher) 택시 개편 및 보도상 도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의 단차 개편 및 보도상 설치블록 정비, 보행시장을 제개, 볼라드(ballard, 자동차 진입억제용 밀뿔) 정비 등을 통해 보도상 정비의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 장애인 이동권 증진 관련 정책 마련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관련 정책에

서울특별시는 이상의 실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관련 정책에 충실이 반영될 것을 선언한다.

2015. 12. 3.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 성실히 이행 하고,
- 장애인단체와 협의와 노력을
- 지속해나갈 것을

• **약속합니다 !**

■ '지하철' 분야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연번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1	쏼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① 쏼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22) - 1동선 미확보 역사 : 37개역(추진중 14, 미추진 23)에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엘리베이터 1억 1동선

자료제공 : 서울교통공사(2020.7.30.)

확보 현황

1동선 확보율 : 91.7%
(전체역사 278역 중 255개역)

1동선 미확보역사
(전체역사 278역 중 23개역)

구분	합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미확보역수	23	1	2	2	1	5	6	5	1
추진중	19	청량리	용답	충무로 교대	명동	마천 종로3가 강동 까치산(외부)	상수 구산 새절 상월곡 봉화산	수락산 청담 고속터미널 남구로 광명사거리	북정
지속검토	4	-	신설동	-	-	까치산(내부) 상일동	대흥	-	-

자료제공 : 서울교통공사 (2020.7.30.)

1동선미확보23개역사중
19역은'22년까지
E/L 설치공사완료예정

계	공사 중	설계 중	지속검토
23역	6역	13역	4역
	(1) 청량리, (2) 용답, (3) 충무로, (3) 교대, (4) 명동, (6) 상수 [(5)까치산*] (외부)	(5) 마천, (5) 강동, (5) 종로3가, (6) 구산, (6) 봉화산, (6) 상월곡, (6) 새절, (7) 청담, (7) 남구로, (7) 광명사거리, (7) 수락산 (7) 고속터미널, (8) 북정 ('20.04월~'21.03월)	[(5)까치산*] (내부) (5) 상일동, (2) 대흥, (3) 신설동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엘리베이터 1억 1동선

자료제공 : 서울교통공사(2020.7.30.)

추진사항

- 현장여건상 E/L 설치가 곤란한
(보도폭 및 승강장 폭 협소 등)
4개 역은 설치 가능 방안
지속 검토 중

⑤ 상일동역 : 승강장 폭 협소로 승강기 설치 불가

⇒ 규모가 작은 특수 E/L 도입 검토

⇒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너비 1.5m(높이 2m) 이내 시설 설치 불가』 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

⑤ 까치산역, ⑥ 대흥역 : 보도폭 협소 및 사유지 저촉

⇒ 사유지 매입 절차 추진【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274억원) 건의】

⇒ 보도 내 E/L 설치 방안 추가 검토 예정(사유지 미매입 방안)

② 신설동역 : 공사 중 사유지(마리아 병원) 임시점용 반대(설계완료, 공사 보류 중)

⇒ 토지소유주(마리아 병원) 지속 설득 중

⇒ 신호기계실 재배치를 통한 E/L 설치 대체 방안 검토 예정

■ '버스' 분야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1	저상버스 100% 도입	① 시내버스 : 도로구조상 저상버스 운행 가능 노선 저상버스 100% 도입(~'25) - 저상버스 도입목표 : 343개 노선, 6,916대 ※ 광역버스(11개 노선, 249대), 및 도로구조상 불가노선(21개 노선, 320대) 별도 대책 수립 ② 중형. 마을버스 : '17년도까지 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 현재 서울시 총 시내버스 7,393대 / 저상버스 4,272대 _2020.12.31. 기준

(1) 2016년~2021년 대폐차 진행(예정) 및 교체 된 저상, 일반버스 수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예정)
총 대·폐차 수	715	757	1,126	854	850	736
저상버스→저상버스	79	77	169	295	402	245
일반버스→저상버스 (순수증차 포함)	273	233	469	463	337	376

※ 현재 서울시 총 시내버스 7,393대 / 저상버스 4,272대_2020.12.31. 기준

(1) 2016년~2021년 대폐차 진행(예정) 및 교체된 저상, 일반버스 수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예정)
총 대·폐차 수	715	757	1,126	854	850	736
저상버스→일반버스	8	47	26	0	0	0
일반버스→일반버스	355	400	462	96	111	115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1. 버스 이동편의 증진

가. 저상버스 보급 확대

□ 누구나 타고 내리기가 쉽고 편리하도록 2011년까지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 보급을 지속 확대

○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08년말)하고 양산체제를 갖추어 전국 시내 버스의 31.5%(586→9,130대)까지 보급('11년)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매칭펀드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모색

<표 5-5>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

(단위: 대, %)

구 분		총계	2006현재	2007	2008	2009	2010	2011
저상버스	대수	9,130	592	304	624	2,240	2,685	2,685
	보급율	31.5	2	3.1	5.2	13.0	22.2	31.5

주) 보급율은 전국 버스대수 29,000대를 기준으로 산정함

<표 5-6> 저상버스의 연차별 사업비 (2013년 최대 50% 확충목표 시)

(단위: 억원, 년)

	총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고보조	2,366.5	152	312	560	671.25	671.25
지방자치단체	2,366.5	152	312	560	671.25	671.25
총액	4,733	304	624	1,120	1,342.5	1,342.5

주) 2008년까지 1대당 0.5억원 지원, 2009년 이후 1대당 0.25억원 지원(대량생산체계구축을 전제)

1차년도(2007-2011)

2011년 목표

31.5%

2011년 달성률

12.0%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2-1. 저상버스 보급 확대

<목표치>

구분	현재 보급률 (2011년)	목표년도 보급률 (2016년)	비고(선정근거)
저상버스	12.0%	41.5%	·2011년 말 보급율 약 12.0%, 3,899대 ·2016년 보급율 약 41.5%, 13,493대

□ (목표치) 2016년까지 수평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

○ 연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도입

<표 6-25>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

(단위: 대, %)

구분		총계	2011현재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상버스	누적대수	-	3,899	4,802	6,214	8,061	10,473	13,493
	보급율	-	12.0	14.8	19.1	24.7	32.2	41.5
	당해연도 도입대수	9,594	-	903	1,412	1,847	2,412	3,020

주) 보급율은 전국 시내버스대수(2011년 기준) 32,552대를 기준으로 산정함

2차년도(2012-2016)

2016년 목표

41.5%

2016년 달성률

19.0%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목표

가) 저상버스

<목표치>			
구분	현재 보급률 (2016년)	목표년도 보급률 (2021년)	비고(신청근거)
저상버스	19.0%	42.0%	· 2016년 말 - 시내 33,882대, 저상 6,442대 · 2021년 말 - 시내 36,037대, 저상 15,178대

참고 : 2차 증진계획(2016년)의 저상버스 목표치 41.5% (시내 32,552대, 저상 13,493대)

- ☐ (목표치) 시내버스의 차령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 저상버스 보급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2.0%까지 보급
- 2021년도 저상버스 보급률은 추세를 고려한 보급 예측치에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재설정(서울시 65%, 광역시 45%, 9개도 32%)
 - * 국비지원 비율 : 서울 40%, 기타 시·도 50%

기관별 주요역할

- 정부(국토교통부)
 - 정책수립 및 설치기준, 표준모델 설정, 국고지원,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주관, R&D 개발
- 지자체
 - 지자체 매칭 예산지원, 사업시행
 - 교통사업자에 시설 설치·개선 명령
- 교통사업자 : 시설 개선·유지·관리,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제공, 운수종사자 교육

- ☐ (신청근거) 증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저상버스 보급 목표치 분석 필요

3차년도(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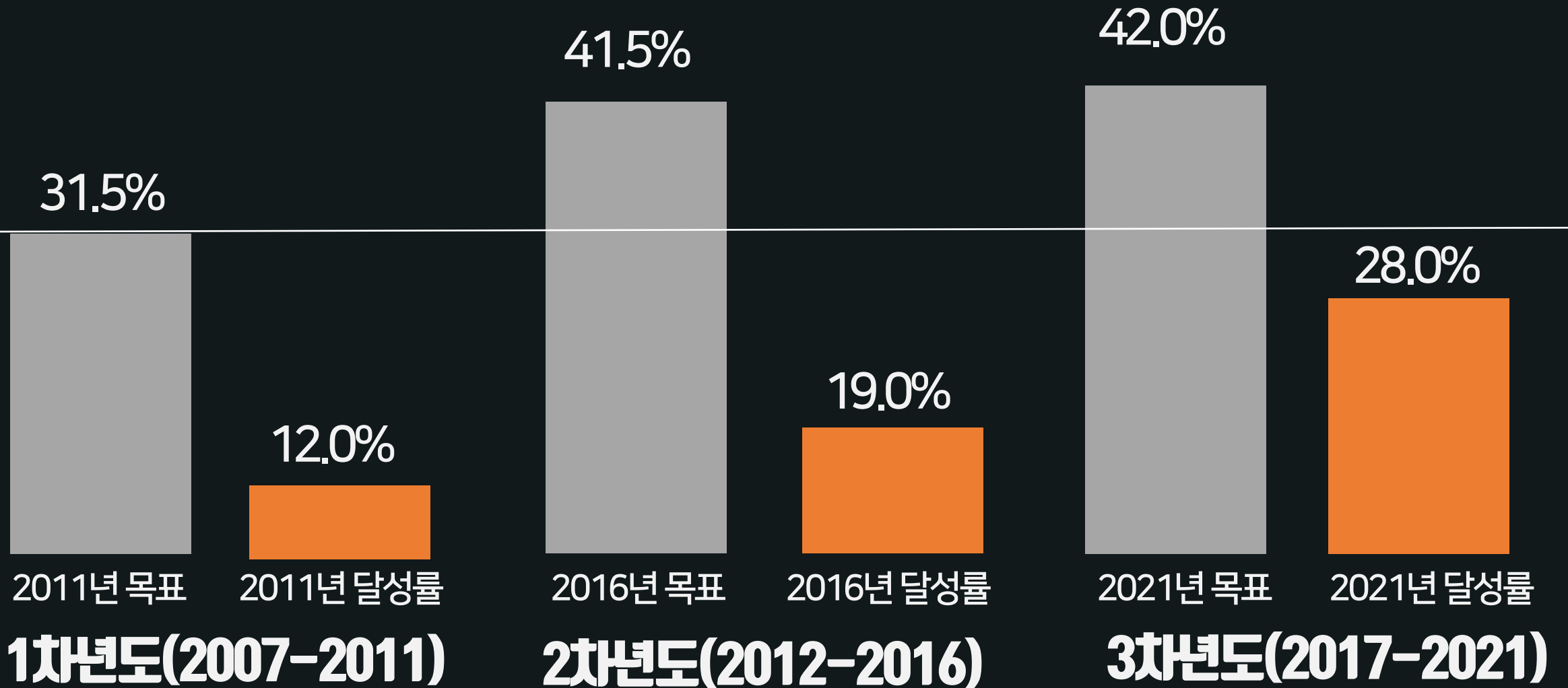
2021년 목표

42.0%

2021년 달성률

28.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목표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8항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2018.6.28

제 목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휠체어이용 장애인 우선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광역이동지원센터 의무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020년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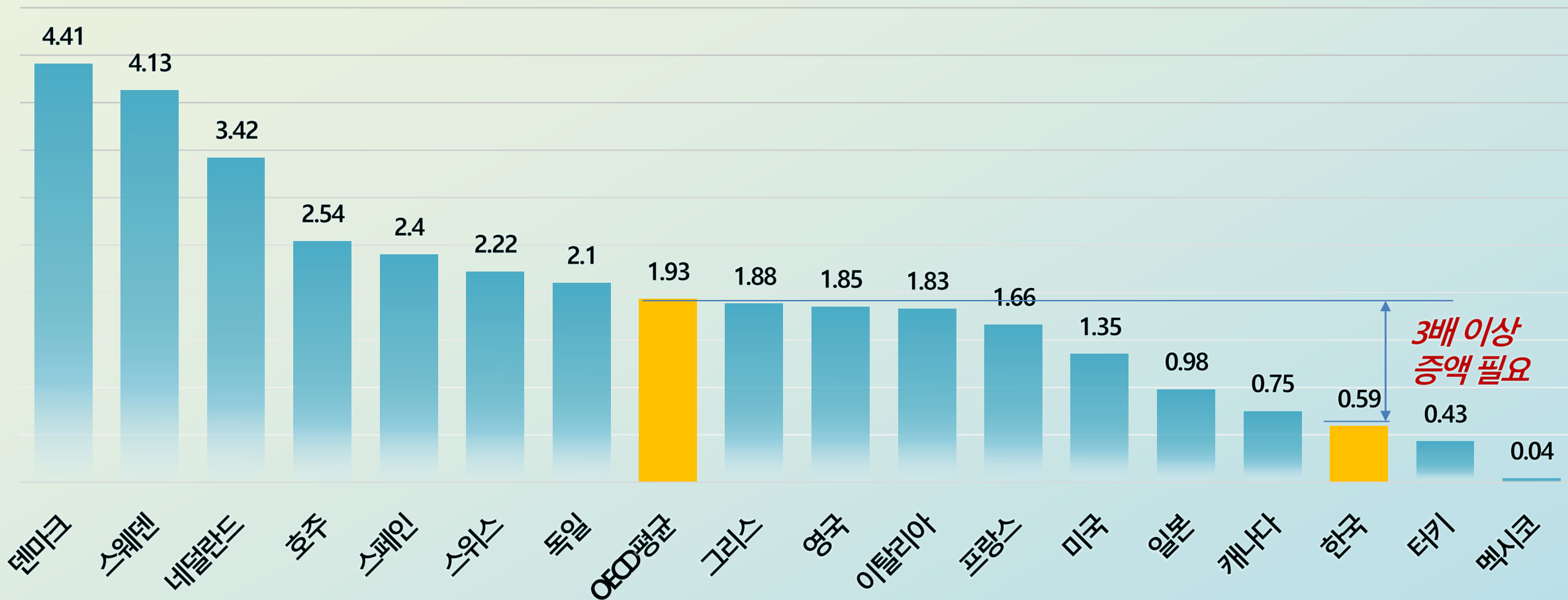
구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64,813백만원	63,610백만원
● 저상버스도입보조	■ 91백만원(저상버스 보조액)×자자체보조 40% ×262대(서울시) ■ 91백만원(저상버스 보조액)×자자체보조 50% ×1,044대(그외시·도)	× 310대(서울시) × 1,014대 (그외시·도)	
●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 42백만원(특별교통수단 보조액)×자자체보조 40% ×46대(서울시) ■ 42백만원(특별교통수단 보조액)×자자체보조 50% ×214대(그외시·도)	× 35대(서울시) × 202대 (그외시·도)	
●	교통약자 장거리이동지원	1,272백만원	1,000백만원
●	이동편의실태조사	189백만원	189백만원
●	BF인정사업	240백만원	240백만원
●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22~/26) 300백만원

64,813백만원

2020년 예산

63,610백만원

2021년 예산



[그림] OECD 각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모든 장애인 복지 관련 공적 지출 합계) 비율

그림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2020 장애통계연보. 표 내용 중 일부 국가만 발췌하여 제시.

20조원 증액해도 GDP의 1.8%에 불과(OECD 평균 수준 도달)

현재 장애인복지 관련 모든 공적 지출 규모 10.4조원(2020년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3.25조원

차별에 저항하라

비장애인만 타는

차별버스 OUT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차별에
저항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 나라이냐!

차별에 저항하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개정

수용하라!

- ☑ 버스 대-패차시 저상버스도입의무화
- ☑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철폐
- ☑ 중앙정부 예산 보장

차별에
저항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 장애인
주치의제도 및
의료접근성
강화하라!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
장애인의 이동권
완전 실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을
약속하라!

도 장애인
이동권
완전 실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을
약속하라!

03

현재
장애인의 삶

수원지방법원 제15부 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609 살인

장애인복지법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1항, 장애인건강권및 의료접근성보장에관
한법률 제4조 제4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제3항

년도	월	일	유형	기사제목	매체
1998	8	11	살해	‘농약요쿠르트’사건, “아버지가사실상범인”	연합뉴스
2000	10	19	살해	장애인아들죽인어머니구속취소	국민일보
2001	4	12	살해	가족,이웃에‘못된짓’40대정신지체인...어머니,누이가청부살해	국민일보
2002	1	19	살해	장애아들둘버리고우울증아내숨지게...비정한가장들구속	국민일보
2002	7	13	살해	“죄인이지만...”불치병아들살해아버지동정여론붐물	국민일보
2002	8	11	동반자살	‘장애할머니-손자동반자살기도...할머니만숨져	동아일보
2003	10	28	동반자살	특수학교교사가장애아들과동반자살기도	동아일보
2003	12	3	살해	‘아들고생보다못해정신지체손녀독극물먹여살해	뉴스스

수원지방법원 제15부 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609 살인
이 사건 기록상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와 그 가족인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년도	월	일	유형	기사제목	매체
2004	10	14	동반자살	3평짜리 단칸방에 로또복권 200장만 남기고 고아 장애인 부부 자살	서울신문
2005	4	12	살해	‘생활고 친족 살해 ‘天倫 무너진다’	경향신문
2006	1	22	동반자살	“돈없는 세상으로”... 장애인 일가족 동반 자살	쿠키뉴스
2006	5	26	동반자살	60대 아버지, 장애인 딸 살해 후 자살	SBS 뉴스
2007	2	28	동반자살	아들 장애 비관 母 동반 자살 기도	경향신문
2007	4	23	살해미수	양육 부담에 외손자 살해하려던 외할머니 "처벌보다 정신치료"	서울경제
2007	12	3	살해	‘울산서 장애인 딸 살해 40대 택시기사 영장	연합뉴스
2007	12	7	동반자살	30대 실직 가장, 두 장애 아들과 동반 자살 기도(종합)	연합뉴스
2008	2	13	살해	차량에 불질러 두 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5년	노컷뉴스

수원지방법원 제15부 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609살인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년도	월	일	유형	기사제목	매체
2009	1	9	동반자살	장애인가족4명,영흥도앞바다서숨진채발견	노컷뉴스
2009	3	17	살해	생활고 비관' 장애 아들 살해한 50대 구속	뉴시스
2010	5	11	살해	법원,장애인유아살해한산모선처	연합뉴스
2010	10	8	자살	슬픈자살'장애인가아들을위하여..."	Views&news
2010	12	18	동반자살	[1보]홍천서장애인가아들과자살기도60대女숨져	뉴시스
2011	1	13	동반자살	장애인가모친,시한부선고받은아들과동반자살	Views&news
2011	2	7	동반자살기도	"함께죽자"장애인가아들과동반자살시도	매일신문
2011	5	23	살해	"장애인가남편죽여달라"50대女징역12년확정	경향신문
2013	11	18	동반자살	50대男,25년째식물인간아들돌보다가·불질러동반자살	세계일보

년도	월	일	유형	기사제목	매체
2013	12	11	동반자살	자폐아 아들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의 피눈물	여성신문
2014	1	15	동반자살기도	‘70대부부, ‘40대장애딸과자살시도하려다극적구조’	경향신문
2014	3	13	동반자살	“자폐증5세아들과30대부부동반자살	매경
2014	3	18	동반자살	오랜투병에생활난비관50대남녀동반자살기도...여성은사망	경향신문
2014	7	2	살해	[사건사고]50대지적장애인노모살해뒤자살	부산일보
2015	1	8	동반자살	“모두위해데리고갑니다”70대할아버지,장애손자와동반자살	국민일보
2015	1	27	자살	"장애인 언니는 좋은 시설에"... 동생의 안타까운 자살	오마이뉴스
2015	3	9	동반자살	돌보던 장애 형 살해뒤 자살... 극단적 선택, 왜 계속되나?	mbc news
2015	5	31	동반자살	장애남편 40년 돌본 70대 아내... 노부부 동반자살 추정	한국경제

년도	월	일	유형	기사제목	매체
2015	7	4	동반자살	우울증아버지,장애인아들살해하고 자살(종합)	연합뉴스
2015	8	26	살해	장애아들살해하고자살기도한父,징역형 선고	뉴시스
2015	8	30	살해	25년간돌본장애인아들살해한노모...“죽으면돌봐줄사람없어서”	경향신문
2016	3	13	살해	시각장애인아버지살해후암매장한아들쇠고랑	한국일보
2016	4	14	동반자살	경찰이장애인아들살해후목숨끊어	부산일보
2017	4	27	살해	중증장애딸살해30대엄마집행유예	한겨레
2017	10	30	동반자살	[사건추적]살인적가난이등떠민 장애인형제의자살	내외뉴스통신
2018	6	22	살해	퇴마의식’한다며 6살 딸 살해 엄마...징역 8년 구형	KBS
2018	12	30	살해	[단독]중증자폐아아들과동반자살시도한노모...	중부일보

어머니는 자폐장애인 아들(41세)을

20181128 새벽2시에
스카프로 목졸라 살해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제15부 형사부 판결

사 건 : 2018고합609 살인

주 문 : 피고인을 징역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스카프)를 몰수한다.

중증장애인을 폐기물 처리하지 말라!

[판결문]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와 그 가족인 피고인이 법에 따른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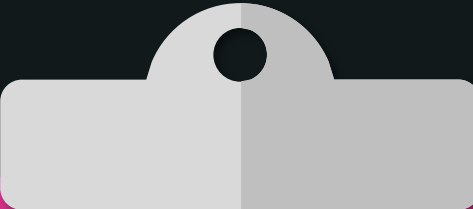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단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민중의소리
vop.co.kr

내 모습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큰 모순 자유 평등
지키지도 않는 거짓 약속
흥! 닥치라고 그래,
언제나 우린 소외 받아 왔고
방구석에 폐기물로 살아있고
그딴 식으로 쳐다보는
차별의 시선
위선 속에,
동정 받는 병신 인줄 아나
닥쳐 닥쳐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Leave No One Behind

감사합니다.
